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263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4. 7 선고 2015나2326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354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6. 3. 17.

판결 선고 2016. 4. 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354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계 894,247,043원[= ①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원 286,459,983원 + ②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원 191,509,830원 + ③ 피고가 회사를 계속 영위함으로 인한 인건비 손해 76,277,230원 + ④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정산금 20,000,000원 + 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 인한 추가비용 32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약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1)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경남단감원예농협으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2. 10. 30. 이후에 발생하는 위 대출금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피고는 2012. 11.부터 발생하는 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피고가 20억 원에 대한 2012. 11.부터 2015. 5.까지의 이자 286,459,983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대출금 이자 상당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피고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의무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B이 원고에게 이행하기로 한 주식 및 사업권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의 반대급부 그 자체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는 그 급부의무의 이행을 면하게 되고, 피고 역시 그와 대가 관계에 있는 주식 및 사업권 등의 양도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무인 대출금 이자 납부의무의 이행을 면함으로써 피고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부담하게 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만약 원고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원고가 부담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어 피고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손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배상을 명하게 되면,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면하게 된 원고의 급부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산종합건설로부터 차용한 1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 손해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청산종합건설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16억 5,000만 원을 청산종합건설로부터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내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원고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위 대출금 16억 5,000만 원에 대한 2013. 1.부터 2015. 6.까지의 이자 191,509,83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인건비 상당 손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해 회사를 계속 영위함에 따라 2013. 1.부터 2015. 6.까지 피고 회사 직원의 인건비로 합계 76,277,23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인건비 지출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그 지출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인건비 상당의 지출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인건비 지출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원고가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계속 존속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4) 추가 토지 매입분 계약금 2,000만 원 상당 손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토지의 계약금 2,000만 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도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면하게 된 원고의 급부의무 그 자체이므로(원고가 그 급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돈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생긴 추가 비용 상당 손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사업의 시기가 늦어져 기존의 계획을 수정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설계용역비,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토지 임차비용 등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피고가 영위하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용역비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영진

판사곽병수

판사정재오